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4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상정된 안건

- | | |
|--|----|
|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 2 |
|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 2 |
|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 2 |
|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 2 |
|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 2 |
|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 2 |
|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 11 |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 11 |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 11 |
| 1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 11 |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개의 주제에 대해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내용이 거의 유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10시05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고기동 차관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수 차장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세 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몇 건씩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대표발의한 첫 번째 안과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공무원 등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개정 사유는 정계사유 관련 조사·수사자료 제공 근거 신설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두 번째 안과 정부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조사·수사자료(기록)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안은 현행에 더해서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양부남 의원안은 정부안에 더해서 감사원의 조사기록도 명시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의무 규정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비위사실의 파악 및 적절한 정계 양정을 위해서 조사·수사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조 제목이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조사기록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조사·수사기록을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양부남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 의견을 감안해서 제공 요청 대상을 '조사·수사기록'에서 '조사·수사자료'로 법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첫 번째, 다자녀 양육자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사유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지므로 징계절차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 **박정현 위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다자녀 우대에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오히려 다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원을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승진에 이게 포함된다고 하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 **조승환 위원** 저도 한 말씀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수사자료나 조사자료를 징계, 그러니까 자체 징계를 위해서 요구하는, 목적이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반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좀 하자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수사나 조사가 되면 여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완전 사법국가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징계라는 게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위해제는 된 상태에서 징계가 유보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수사나 감사에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규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나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징계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체가 다 굴러간다 그런다면 전반적으로는 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총괄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의무적으로 중단이 되는데 수사의 경우에는 중단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도 사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몇몇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 가지고 우리가 자료 협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은 지금 조사나 수사 중간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법적 근거……

○**조승환 위원** 다 끝나고 난 뒤, 만약 예를 들어서 불기소처분을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사 중간에 중간수사에 대한 자료를, 피의자 신문조서를 달라 내지는 참고인 진술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자료는 주지 않을……

○**조승환 위원** 안 될 거고.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나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면 징계 처분을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조승환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하지요.

○**양부남 위원** 예,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지요.

○**조승환 위원** 예.

○**양부남 위원** 수사나 감사의 결과를 보고 하지요. 그러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 어떤 비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리려면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당연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서를 달라면 주지도 않을 뿐더러 달라고 하지도 않지요. 합리적 징계를 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제 경험상입니다마는 4년 6개월을, 그러니까 수사되고 재판 넘어가면서 징계를 안 하게 되니까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방침하에서 기다리거든요. 4년 6개월을 갖다가 하위직 공무원, 8급 공무원이 4년 6개월이 직위해제가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위해제 규정이 기간에 따라 가지고서 봉급이 차감되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맞습니다. 직위해제 관련해서는 원래 잠정적인 조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직위해제를 3개월 있을 때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직위해제는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3개월은 연봉의 40% 그다음에 20%만 주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4년 6개월쯤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금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급은 20%-30%밖에 안 나오는데 연금이나 의료보험료는 원래 받는 봉급에서 다 빼 가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위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저는 개인적인……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차라리 공무원 범죄 부분에 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6개월 안에 끝내자.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이러니까 결원 보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법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사혁신처 가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이것 3개월 지났으니까 결원 보충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상 인사혁신처에서 오케이 해 주지를 않거든요. 오케이

해 주지를 않는 상태에서 결원 보충도……

그리고 그 사람, 비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 우리가 비위라는 게 아주 죄질이 나쁜 것부터 시작해서 단순 실수로 인한 어떤 비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건은 수사자료 얻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정계 운영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말씀은 정계의 기간을 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어쨌든 리뷰하는 거니까……

○**양부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법의 논의의 초점은 정계의 시기를 언제 하냐가 아니라 정계를 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환 위원** 맞습니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다음 주제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부터는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축소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 기간을 현행 영구적인 임용 불가에서 20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5월 31일 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영구결격에서 상당한 기간(20년) 동안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15년이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다양하지만 결격 기간의 최장 기간은 20년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명확성 제고를 위해 유사 입법례 그다음에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형의 해석상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감안하여 정부안의 가목과 나목을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규율로 정비하되 가목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나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나목과 다목 간 체계정합성 담보를 위한 법문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죄질이 더 중한 벌금형(실형)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보다 임용결격 기간 적용에 있어 오히려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목을 벌금형에 관한 규율로 통합하여 정비하되 기산점을 형 확정일로 하여 실형에 해당하는 경우와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동일하게 규율하였습니다.

수정의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는 결격 사유 관련 '형의 집행유예'의 표현 방법을 수정의견과 같이 변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동 수정의견은 좌측의 유사 결격 사유 관련 입법례를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현행 입법례 중 최장 기간인 2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자는 거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아닙니다. 영구로 돼 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20년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영구로 돼 있는 걸 20년으로……

저는 영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분히 그러실 것 같고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9쪽입니다.

정부안의 네 번째 개정사항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제외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인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이미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정사항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주체에 징계처분 제청권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통보 주체를 처분권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인 경우 제청권자인 소속 장관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없고 처분권자인 대통령만이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교부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정사항은 개방형 직위 지정 간주 규정 삭제 관련입니다.
개정안들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실·국장급,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 또는 6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둘째 단락입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개방형 직위 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즉시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보다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그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두텁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첫 번째,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삭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위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확대는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처에서는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관련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 처분권자·제청권자 모두 가능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것은 처분권자만 돼 있어서 조문 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방형 직위 관련된 겁니다.
현행법상 실·국장급 임기제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함과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개방형 임기제하고 일반 임기제하고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임기제라는 것은 직업공무원과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60세까지 보장이 안 되는, 그 직위에 한해서 몇 년 주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개방형은 내부의 어떠한 승진제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식인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개방형은 내·외부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

○**양부남 위원** 개방형과 반대되는 개념이 뭔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지금 개방형과 임기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선발을 누가 하느냐. 개방형은 인사처에 있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 임기제는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외부 민간위원을 모셔 와서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개방형이 더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저희가 지금 개방형 직위를 없애려는 게 아니고 부처에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임기제 형식으로 장관 주재 아래 외부 위원 선임해서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개방형을 통해 인사처에 의뢰해서 하는 선발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러한 취지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를 주무 장관으로 하여금 개방형으로 하든 일반으로 하든 선택권을 준다 하면 그 직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해당 대상 직급을?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개방형 직위 국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다 있습니다. 임기제도 마찬가지고요.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을 바꾼다면, 공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직위를 높일 필요성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국장급으로 한다든지.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지금 개방형제는 국장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급도 하고 있고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국장급도 하고 있고 과장급도 하고 있는데, 과장급의 경우에는 이미 소속 장관이 개방형 직위로 할 수도 있고 임기제로 별도 채용할 수 있는데 국장급은 무조건 개방형 직위 형태로만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풀어 줘서 옵션을 제공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없으면 다음 주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29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정사항은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형사기소 및 조사·수사 등을 사유로 한 직위해제의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한 직위해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사유는 파면·해임 등 근무했던 직위에서 배제하는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결원 보충 기간을 단축하여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어구 반복 등을 피하기 위해 법문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30페이지와 31쪽에 걸쳐서 제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정사유는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8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과학분야 우대 정책에 따라 공무원 분류를 위한 직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표기를 만 8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조사·수사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 해당 조항이 들어갈 때로 소급하여 적용하는데 이 소급 적용이, 일단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라는 공익적 측면이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이 건에 관해서는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동 임용 결격사유 창설 당시인 2019년 4월 17일 적용 대상이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 부칙 제2조 1항 중 ‘실형·집행유예’를 ‘형’으로 정비하여 당시 규정과 명확하게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하였다 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당연퇴직 특례와 관련해서 보면 개정시한 경과 시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법률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당 기간에 임용된 사람으로 이 법 시행일 전에 미성년 대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과 개정시한 경과 전 임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에 미성년 대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불가피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칙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 등은 법제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수사 또는 재판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직위 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 번째,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어 표기 변경 관련돼서는 첫 번째,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거고 두 번째, 만 8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바꾼 것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바꾸게 되었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부칙 관련돼서도 전문위원 겸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헌법불합치 정비 시한하고 이 중간의 갭이 생길 때 임용된 사람들은 퇴직 권고를 합니까, 강제 퇴직을 시키게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부칙을 넣어서요 당연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일에 맞춰 가지고 임용돼서 공백기에 들어온 분들은 무조건 당연퇴직 되게……

○**이달희 위원** 그러면 미리 공고해서 이런 분들이 아예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맞습니다. 지금도 공백기에 가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에 그런 안내를 해서 이미 우리가 정부 입법안을 냈고 지금 진행 중이며 그 개정안에 따르면 당연퇴직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사전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한 번 리뷰를 한 거고요 다음번 소위에서 어떻게 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11)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2)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1)

1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현승 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0)

(10시34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규정한 법률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시범적 설치·운영에서 벗어나 본격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문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은 근거 법률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고요,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현행은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발전, 지자체 위임·위탁 사무 처리, 관계 법령, 조례·규칙에서 위탁하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 안은 공동체 형성,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해식 의원님 안은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는 현행은 위원의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해식 의원님 안은 주민자치회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 근거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 여부는 개정안들은 시범 실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해식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병도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치 관련해서는 현행이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음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서 이해식 의원님 안은 주민이 그 주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해식 의원안이 설치의 주체를 주민으로 하여 주민의 자율성을 강조·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해식 의원님 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주민자치회 기능을 반영

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표에 보시면 위원 선정 및 위촉이 이해식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두고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지위는 명예직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병도 의원님 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첫째, 보시게 되면 위원의 선정·위촉 방식 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촉자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이해식 의원님 안은 주민자치회 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회원의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모두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의무, 정당가입 금지 의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재원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협의체, 위임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 간 연계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든지 조례 등의 제정·개정의 필요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의한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또 병립 가능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먼저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방

자치법으로 이관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현재 지방분권법에 있는 체계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한 50% 정도, 한 1700개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한 1300개, 한 36%, 37%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별로, 시도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이라든지 전남, 경북, 제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한 80% 이상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르고 또 동별로도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주민자치법에 다시 옮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회가 현재 운영된 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주민자치회가 안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분권법이 여러 가지 지방분권과 관련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율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체계를 봤을 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권법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 보자라는 거고 여야 간에 쟁점이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의 의견, 정부 측 의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닥을 잡자라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된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은 ‘아니다, 이게 좀 왜곡될 수 있다. 이것 정돈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된 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어차피 법안소위에서 이 법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상정이 된 거니까요 기坦 없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여야 간의 이견보다는 지역에, 같은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대구나 전남 안에서도 또 따로 이렇게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자치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전국으로 보면 자치위원회가 1703개 있고 자치회가 1316개 있는데요. 거기에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 하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니 자치위원회가 먼저 생겨서 쭉 이렇게 활동하다가 자치회가 그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권고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역의 자치위원들이 다 모여서 다 검토를 해서 우리는 다른 대 자치회 하는 것 보고 변경하자 해서 또 옆 동네 자치회 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자치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다.

자치회가 예산 지원도 되고 사업도 있는데 왜, 어떻게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또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또 자치회 하는 데에서도 스위스식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밑에서

부터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예산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렇게 선명하게, 한 도시에서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낫다 저게 낫다고 아직 판가름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자치니까 진짜 자치에 맡겨서 그 지역에서 자치, 주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 집행해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구가 특별히, 의회에서 물론 이 부분도 사업비를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특별히 없고 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니까 주민들한테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이런 기능을 지방분권법에 그대로 두고 자치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한병도 위원님.

○**한병도 위원** 오늘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한병도 위원** 그래서 비교표 관련된 내용은 좀 뒤로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주장을 하시는데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충원 과정에서 출마 예정 전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 이런 반론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시군구별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 근거를 법률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중앙집권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률적 이야기도 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나 근거 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민자치회 부작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라는 개정안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헌법·법률·조례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안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시민단체가 권력형 상급단체가 되어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구조 개선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차원의 사회적 업무에 대한 의결권·집행권을 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고 또 교환되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자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획에서 행정관료가 중심이 된다면 주민의 뜻 반영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법률안을 통해서 이러한 정확한 일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 법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문대비표 이것 관련된 것은 다음 법안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차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시작한 지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은 현행 균형발전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법제화할 계획을 혹시 부처에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현재 균형발전법에 ‘시범으로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시범’을 빼어 내는 거지요? 10년 동안 시범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통상?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하시다가 최근 한 몇 년, 3~4년 사이에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는 얘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들, 우려들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당장은 부처에서는 이 ‘시범’ 자를 뺄 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자치회든 자치위원회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단체장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자치회로 갔다가 자치위원회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에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단체장님 성향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도별로 도시지역·농촌지역 또 읍면동 단위별로 굉장히 다른 성격이 나타난 거는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된다면 전혀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그거 아닌가요? 지역 상황에 맞춰서 도심형·농촌형에 따라서 자치회나 자치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걸 자치회로 다 간다든지 아니면 시범사업 하고 있는 거 그냥 자치위원회로 바꿔 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어느 쪽이 옳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 조직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지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정확한 실태가 어떠한지, 실제 운영은 어떤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권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과 관련해 대동소이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게 시범실시가 10년을 경과했다고 하지만 차관님 설명대로 실제 자치회가 숫자가 확 늘어난 게 2019년부터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 처음 시작할 때 31개였다가 2018년도에는 85개밖에 안 됐다가 2019년도 408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실시의 의미라는 것은 연한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현장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발현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 그 관점에서 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양상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그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언제 나옵니까, 올해 나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연말 나오지요. 그런 실태조사 결과들을 좀 차분하게 훑어보고 우리 국회 차원으로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실시와 관련해 10년이라는 이 부분에만 천착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안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건영 간사님 말씀하고도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 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럴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휘둘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하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기초단체장이 있고 기초의원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같이 휘둘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법안에는 휘둘릴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점에 대한 개선들이 전제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한병도 위원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에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회가 기존에 운영돼 왔던 것들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대가 되면서 규모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 단계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1998년 IMF 이후에 동사무소 폐지에 따른 공간 활용 문제로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제 지역과 관계 없이 주민자치회 운영되는 것들, 사업들 하면 정말 자발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게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이 마을에 보내는데 골머리가 됐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민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휴게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자치활동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이것들이 행정의 시각이 아닌 현장에서 행정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한 번 다녀왔는데 한 20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다는 걸 발표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 어디에도 정치적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당에 있으면 이게 조직적으로 장악이 될 거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 진행 내용은 꼭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문을 보면서, 아까 여러 좋은 말씀도 주시고 했으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시지요.

○조승환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두 분, 조 위원님 하시고 박 위원님 하시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사실 좀 지방자치에 대해서, 뭐 제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본 것 자체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지방자치회나 지방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여의도동만 따지자 그런다면 충분히 저는 주민자치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골의 면 단위라든지 인구가 적은 지역에 가면 이 무슨 주민자치…… 사실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보면 마을 단위로 해 주고 마을 단위의 연합체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더 제도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만 볼 거는 아니고, 지금 용역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과연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그냥 법규적으로 편한 의미대로 읍면동 단위로 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의 어떤 행위나 행태 부분이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문외한으로서 이걸 처음 보면서 느꼈습니다, 느끼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지가 벌써 한 30년 이상 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 정말 별의별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중에는 법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들도 있고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법상으로 근거 없는 것은 이장·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연합체 또 전임 통장·이장협의회,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물론 민간의 어떤…… 그런데 꼭 사적인 모임 같지도 않아요, 보면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최소한 회의 할 때는 장소 지원도 받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제가 중앙적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내지는 이런 걸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이런 걸 좀 더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는 중간 지원조직·중간 허브조직에 대해

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거든요. 역할과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둡니다. 인구소멸 되고 있는 특히 우리 시골 같은 경우, 우리 어촌이나 이런 데에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그래서 마을의 생태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로 보는데 이 단위 자체도 저는 읍면동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나 지역을 더 세분화된 어떤 지역 베이스로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용역 결과 보고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의 보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지원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 해결도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저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맞다……

예전에 기반시설을 닦을 때는 동네에서 목소리 큰 몇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행정에서 받아서 이행하면 됐었지요. 그리고 그게 대충 팔구십 %는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반을 닦는 시대는 아니고 동네 어린이 공원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공원으로 해야 된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행정에서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집행했을 때 굉장히 큰 질타를 받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뭘 만들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해진 현실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에서 하면 되지 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냐, 이것이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변화에 대한 인지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착시키려면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범’은 뗄 때가 됐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걸 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도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을 믿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 지원들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제가 행정을 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간사 협의 과정에서 부산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 이외에도 제주·전남·울산·인천·경기북부와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제정안이 함께 발의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 우리 행안위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따로 또는 통합 공청회를 개별 공청회든 공청회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관련한 법률안을 상정하는 정도까지만 하고요. 차후에 여야 간사 간의 일정은 조율해서 따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한 분 이야기하시고 마저……

○**이성권 위원** 이거는 지금 법안에 대한 소위 차원의 검토보고도 행정실에서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소위 자료는 아직……

○**이성권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조만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관련된 특별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된 상태에서 지방이 나름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들이 잘하는 장점을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는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작년 한 10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전 조율을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법안의 경우는 아직은 정부가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으로 묶어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빨리 진척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우리 행안위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을 이렇게 상정해 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소위를 할 때 입법청문회를 겸해서 빨리빨리 좀 날을 잡아서 하나씩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다른 위원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소위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법안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성권 정춘생 조승환 한병도
○청가 위원(1인)

김성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